

# 질병관리청,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통해 15개 부처와 공동 대응

- 「검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구성 및 운영 구체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과 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검역법 시행령」이 7월 1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감염병 유행 초기 단계부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검역법」이 일부개정(‘25. 12. 30. 공포, ’26. 7. 1.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회의체로 운영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는 외교부, 법무부 등 15개 기관\*, 위원의 직급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였다.

\*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28일, 에볼라바이러스병 범부처 대응을 위해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개최한바 있다. 회의에서는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24시간 상황관리, 검역, 역학조사, 의료대응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재외국민 및 남수단 파병부대 보호·관리를 위한 조치가 논의되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을 경우 초기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부처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붙임> 1.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 검역법(모법) 일부개정내용

담당 부서	감염병위기관리국 검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승은 (043-719-9200)
		담당자	사무관	정우재 (043-719-9218)
			주무관	최현지 (043-719-9211)



현행	개정안
<p><u>&lt;신설&gt;</u></p>	<p>제1조의2(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 등) ①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이하 이 조에서 “상황평가회의”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상황평가회의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질병관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교육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 및 질병관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p> <p>2. 위원장이 상황평가회의의 협의사항을 고려하여 상황평가회의</p>

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③ 위원장은 상황평가회의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상황평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질병관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황평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현 행	개정 법률
<p>&lt;신 설&gt;</p>	<p>제5조의2(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①  <u>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질병관리청 및 감염병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이하 이 조에서 “상황평가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u></p> <p>② <u>상황평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외국인의 입국 제한</u></li> <li>2. <u>운송수단 운영</u></li> <li>3. <u>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및 상황평가회의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li> </ol> <p>③ <u>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황평가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